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⑥ · ⑦ (생략)	<u>급 등에 관한 사무 :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u> ⑥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2